

— 구미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 - 공제등의가입조례(안) —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3년 4월 30일

나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3년 5월 1일

라. 상정일자 : 2003년 5월 7일

제7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복지환경국장 김 인 중

나. 제안이유

○ 인감발급 민원담당공무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주의, 실수가 민원사고로 이어져 재정손실은 물론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있어

○ 인감중명법시행령 개정으로 재정보중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인감사고로부터 위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임.

다. 주요내용

○ 인감담당공무원의 범위를 인감의 신고(변경신고포함)업무, 인감중명발급업무,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로 정함.(제2조)

○ 보험의 가입은 매년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해 보험에 가입하되 보험가입 금액은 1인당 최저 300,000천원 이상 가입(제3조)

- 보험료의 지급은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.(제4조)
- 인감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관계보험회사에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되,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에게 변상할 수 있도록 규정 함.(제5조)

라. 참고사항

-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(보험·공제등의 가입)
- 경상북도 총무12130-10230(2003. 01. 29)호의
인감담당공무원보험·공제등의가입조례준칙안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춘 배

- 경상북도 인감담당공무원보험·공제등의가입조례 준칙안에 의거 구미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·공제등의가입조례 제정안 임.
- 2002. 12. 31 대통령령 제17867호로 개정·공포된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“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
- 인감담당공무원의 범위, 보험가입방식, 보험가입금액, 보험료의 지급등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서 타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